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제1651호) 개정·공포 알림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제1651호)이 아래와 같이 개정·공포('20.10.16.)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< 주요 개정 내용 >

별표 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·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</li> </ul>
별표 1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 등을 구비</li> </ul>

2. 해당 개정령은 '20.10.16.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제1651호)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본부(52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관련협회

주무관 **제권모** 사무관 **최규호** 식품안전정책 2020.10.16. 과장 **김용재**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1205 (2020. 10. 16.) 접수 식품안전정책과-11219 (2020. 10. 16.)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016 팩스번호 043-719-2000 / [beliebt81@korea.kr](mailto:beliebt81@korea.kr) / 대국민 공개